

상해시, 7월부터 종합보험 및 소도시보험 취소 및 상해시 사회보험으로 통합

2011년 6월 29일

코트라 칭다오 이평복고문

1. 상해시는 지난 6월 28일, 사회보험법의 7월 1일부 시행에 따라, 상해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촌호적 외지노동자(농민공)에 적용되어 온 상해시 지역성보험인 “종합보험(‘외지노동자 종합보험제도’의 약칭)”를 철폐하고 상해시 “사회보험” 제도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수의 외지 농민공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의 충격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납부기수(기준액)는 2011년 7월부터 향후 5년 과도기간 중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편, 도시호적을 보유한 외지노동자의 경우는 과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상해시의 사회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종합보험”외에 상해시에서 운영해 오던 상해시 교외지역 소재기업에 근무하는 상해시 호적보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도시보험(小城镇社会保险)”도 7월 1일부로 철폐되고 역시 상해시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된다. 단, 3년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납부비율이 인상된다 (납부기수는 3년간 사회평균임금의 60%로 고정 설정됨).

3. “종합보험”의 철폐는 비록 향후 5년간 과도기가 설정되긴 했지만, 기업의 인건비 압박을 대폭 가중시킬 것이 틀림없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공인의 상당수가 외지 농민공이고 공장의 구인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회사로서는 회사의 납부부담 증가외에도 농민공의 임금 수입 감소분(개인 보험납부 개시에 따른 임금공제분)의 보진이 불가피하므로 인건비 부담의 급증이 예상된다.

상해시 제조업체의 인건비부담은 당장 오는 7월부터 1인당 292 위안이 증가되고 향후 5년간 1인당 약 15%이상씩 늘어나게 된다 (사회평균임금 연 10% 상승+ 과도기간 중 매년 납부기수 5%씩 점진 상승). 상해시에서 제조업 말고도 외지 농민공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종전 종합보험 납부시 기업의 부담 (노동자는 납부면제)

- 납부기수: 상해전년도 직공사회평균임금(2010년 3,896 위안) X 60%=2,338 위안
- 납부율: 2,338 위안 X 12.5% (전액 사측 부담) = 292.20 위안 (1인당 부담액)

○ 2011년 7월 1일부 부담액

- 납부기수: 1,558 위안 (3,896 위안 X 40%)
- 납부액: (1) 회사: 444 위안 (1,558 X 28.5%)
(2) 노동자: 140.20 위안 (1,558 X 9%)

○ 회사의 부담 증가액 (외지 농민공 1인당)

(변경) $444 + 140.20 = 584.20$ 위안(사측이 농민공부담액을 전액 보진해 줄 경우)

(종전) 292.20 위안

[증가액] 292 위안

4. 상해 교외소재한 기업의 상해호적자에 적용되는 소도시보험의 경우도 종합보험 과 마찬가지로 기업 인건비증가로 직결된다. 종전까지 회사만 납부하던 것을 7월부터 노동자의 개인납부가 강제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도기간은 종합보험 보다 2년 짧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3년간 가파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 하다.

○ 종전 소도시보험 납부시 기업의 부담 (노동자는 납부면제)

- 납부기수: 상해 전년도직공사회평균임금(2010년 3,896 위안) X 60%=2,338 위안
- 납부율: 2,338 위안 X 25% (전액 사측 부담) = 584.50 위안 (1인당 부담액)

소도시 사회보험납부비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회사만 부담	17%	5%	2%	0.5%	0.5%

(주) 납부기수 = 상해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의 60%

○ 2011년 7월 1일부 부담액

- 납부기수: 2,338 위안 (3,896 위안 X 60%)
- 납부액: (1) 회사: 631.30 위안 (2,338 X 27%)
(2) 노동자: 163.70 위안 (2,338 X 7%)

○ 회사의 부담 증가액 (노동자 1인당)

(변경) $631.30 + 163.70 = 795$ 위안(사측이 직원부담액을 전액 보진해 줄 경우)

(종전) 585.50 위안

[증가액] 209.50 위안

상해시 사회보험 납부비율 변화

구 분	상해시 사회보험	종합보험 → 상해 사회보험 [5년 과도기간]	소도시보험 → 상해 사회보험 [3년 과도기간]
양로보험	22%(사)+ 8%(노)	22%(사)+ 8%(노) [2011년 7월-2012년 3월] 납부기수: 사회평균임금 40% [2012년 4월-2013년 3월] 납부기수: 사평임금의 45% [2013년 4월-2014년 3월] 납부기수: 사평임금의 50% [2014년 4월-2015년 3월] 납부기수: 사평임금의 55%	납부기수: 사회평균임금 60% [2011년 7월-2012년 3월] 17%(사)+ 5%(노) [2012년 4월-2013년 3월] 19%(사)+ 8%(노) [2013년 4월-2014년 3월] 22%(사)+ 8%(노)
의료보험	12%(사)+ 2%(노)	6%(사)+ 1%(노) [2011년 7월-2012년 3월] 납부기수: 사회평균임금 40% [2012년 4월-2013년 3월] 납부기수: 사평임금의 45% [2013년 4월-2014년 3월] 납부기수: 사평임금의 50% [2014년 4월-2015년 3월] 납부기수: 사평임금의 55%	납부기수: 사회평균임금 60% [2011년 7월-2012년 3월] 7%(사)+ 1%(노) [2012년 4월-2013년 3월] 9%(사)+ 2%(노) [2013년 4월-2014년 3월] 12%(사)+ 2%(노)
실업보험	2%(사)+ 1%(노)	불적용	2%(사)+ 1%(노)
공상보험	0.5%(사)	0.5%(사)	0.5%(사)
생육보험	0.5%(사)	불적용	0.5%(사)
납부기수	[2011년] 최저(2,338 위안) - 최고(11,688 위안)	[2011년 7월 납부기수] 1,558 위안	[3년 과도기간중 납부기수] 2,338 위안

종합보험의 5년 과도기간중 기업코스트 증가 분석

년도	납부기수	납부비례 (회사+노동자)	보험항목 비례	기업코스트 (노동자부담분의 전액 기업보진시)
2011년 상반기	2,338	12.5%(회사)	양로:22%(사)+8%(노)	292.30
2011.7-2012.3	3896 X 40%	37.5%	의료:6%(사)+1%(노)	584.20
2012.4-2013.3	X 45%	37.5%	공상:0.5%(사)	-
2013.4-2014.3	X 50%	37.5%		-
2014.4-2015.3	X 55%	37.5%		-
2015.4	X 60%	37.5%		-

소도시보험의 3년 과도기간중 기업코스트 증가 분석

년도	납부기수	납부비례 (합산)	비례분배	기업코스트 (노동자부담분의 전액 기업보진시)
2011년 상반기	2,338	25%	25%(회사)	585.50
2011.7-2012.3	3896 X 60%	34%	27%(사)+7%(노)	795.00
2012.4-2013.3	X 60%	42%	31%(사)+11%(노)	-
2013.4-2014.3	X 60%	48%	37%(사)+11%(노)	-
2014.4	X (60-300)%	48%	상해 사회 보험비 례 기준	-

(끝)